광명시 공고 제2024-975호

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광명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4월 4일

광 명 시 장

1. 구분: 일부개정

2. 개정이유

「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」가 폐지(2023. 12. 22.)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- 3. 주요내용
 - 재원을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내용개정(안 제3조제6호)
- 4. 개정조례안: 붙임

5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, 개인은 2024. 4. 24.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(참조: 균형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 제출사항
 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이유)
 - 2)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제출기관 : 광명시장(참조: 균형개발과장)
 - 1) 주소: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(우14234)
 - 2) 팩스, 이메일: 02-2680-5467, lmh2503@korea.kr
 - 3) 문의처: 광명시청 균형개발과(☎ 02-2680-6946)

의 견 제 출 서

자 치	법규	- 명 :	광명시	도시재	정비촉진	민특별회계	설치	및	운용	조례	
성명	(단체	명):									
주		소:									
연	락	처:									

	찬성여부				
조례안 내용	찬성	반대	의 견	비고	

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 시설의 설치·지원 등을 위하여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6. 16.>
 - 1. "재건축부담금"이란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 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.
 - 2. "기반시설"이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- **제3조(재원)**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4. 15., 2014. 8. 22.>
 - 1.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- 2.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
 - 3. 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따른 재건축부 담금 중 광명시 귀속분
 - 4. 「지방세법」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라 부과
 -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
 - 5.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
 - 6. 경기도 보조・융자금
 - 7.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,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

- 제4조(용도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 - 1.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
 - 2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 - 3.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・징수에 소요되는 경비
 - 4.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
 - 5.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
 - 6. 총괄계획가,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
 - 7.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·설계비·연구비
 - 8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- 제5조(보조 및 융자의 범위)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법 제24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
 - 2. 영 제2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
 - 3.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
- **제6조(융자조건 등)**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 한 약정에 따른다. <개정 2019. 8. 2.>
 - 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8. 2.>
 -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

- 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에 따른다. <개정 2014. 8. 22., 2019. 8. 2.>
-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「재무회계규칙」제103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금고설치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중 시금고를 말한다. <개정 2014. 8, 22.>
- 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**제8조(준용)**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.
- 제9조(특별회계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3. 12. 28.> [본조신설 2018. 12. 21.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: 관 부 서	균형개발과		
이	실·과 장	서환승		
안	팀 장 직위·성명	재개발팀장 김수정		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미혜 (02-2680-6946)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재원) 광명시 도시재정비 촉진	제3조(재원)
특별회계(이하"특별회계"라 한다)	
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	6. 경기도 보조・융자금
계 조례」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	
정에 따른 보조·융자금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 발췌 서

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[시행 2023. 12. 22.]

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[시행 2022. 10. 31.]

제5조(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) ①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·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2.5.11., 2012.11.6.>

1.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<개정 2012.11.6.>

경기도조례 제7820호, 2023. 12 22. 폐지

- 2.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<개정 2012.11.6.>
- 3.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제3호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<개 정 2012.11.6.>
- 4.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, 설계비 및 연구비<개정 2012.11.6.>
-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·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2.5.11., 2012.11.6.>
 - 1.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<개정 2012.11.6.>
 - 2.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<개정 2012.11.6.>
 - 3.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,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,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<개정 2012.11.6.>
 - 4.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<개정 2012.11.6.>
- 5. 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<개정 2012.11.6.>
-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・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□ 미첨부 사유

- O 본 의안의 시행은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
- ※「지방자치법」제78조 및「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4조 근거

신도시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장 서환승